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1563호(號) 1932(昭和 7)년 3월 26일 토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151호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임(朝鮮國有鐵道貨物運賃)에 대하여 아래[左]와 같이 할인(割引)함.

1932(昭和 7)년 3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- 1 품 명(品 名) 쌀[米]
- 2 발 역(發 驛) 진주(晉州), 남문산(南文山), 함안(咸安)
- 3 착 역(著 驛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
- 4 급종별(扱種別) 차급(車扱)
- 5 임 륜(賃 率) 보통임륜(普通賃率) 3할(割) 감(減)
- 6 기 간(期 間) 1932(昭和 7)년 4월 1일부터
1933(昭和 8)년 3월 31일까지
- 7 기 사(記 事) 가 소정임륜(所定賃率)에 의(依)하여 탁송(託送)한 화물운송장기재하수인(貨物運送狀記載荷受人) 1인(人)당(當) 부산(釜山), 초량(草梁) 역착(驛著) 통계(通計) 3천 톤(噸) 이상(以上)을 하수(荷受)한 경우 당해(當該) 하수인(荷受人)에 대(對)하여 기수운임(既收運賃)과 본(本) 임륜(賃率)에 의(依)한 운임과의 차액(差額)을 환급(還給)함으로 함.
나 본(本) 임륜(賃率)의 적용(適用)을 받고자 하는 자(者)는 매월(每月) 아래[左]에 게시(揭示)한 양식(樣式)의 조서(調書)를 조선총독부 철도국 영업과(朝鮮總督府鐵道局營業課)에 착역경유(著驛經由) 제출(提出)하는 것으로 함.

진주·남문산·함안 발, 부산·초량 착 쌀 운임 조서[晉州南文山咸安發釜山草梁著米運賃調書]

(월분[月分])

하수인(荷受人)

화물운송 통지서 (貨物運送通知書)	발역(發驛)	착역(著驛)	톤수(噸數)	소정운임(所定運賃)	할인운임(割引運賃)	환금액(還給額)	기 사(記事)
일부(日付) 번호(番號)							
계(計)							